NASC

Volume. 07

News Letter

www.nas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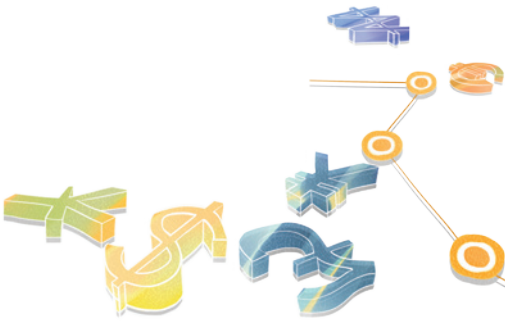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공지사항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www.nasc.or.kr

NASC
Volume. 07
News Letter
www.nas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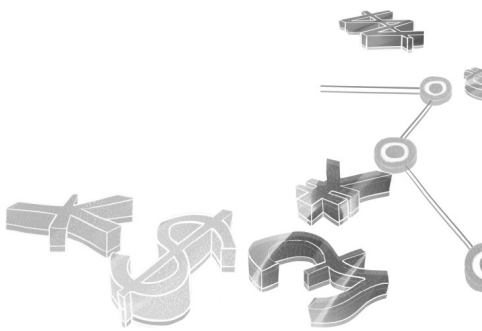

목차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공지사항

01 NASC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

현지용 책임연구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팀
Tel_02.3149.7567 / e-mail_hyunjy@kicpa.or.kr

01 머리말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통합 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9회계연도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그 기간이 끝난 201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국회에 최초로 국가통합 재무제표가 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기준센터는 다양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첫째,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앙관서 재무결산 마감 일정 단축(3월말 → 2월말)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기준센터와 함께 2011회계연도 중간결산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둘째,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재무결산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실무자를 위한 3종 지침서(업무매뉴얼, 오류사례집, 계정과목해설서)'를 작성・배포하였다.

셋째,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작성 지원을 위해 민간 회계전문가로 '회계・결산지원단'을 구성하여 각 중앙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각 중앙관서에 배치된 '회계・결산지원단'이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회계・결산지원단' 교육, 중앙관서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 글에서는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의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02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변동사항

① 중앙관서 재무결산 일정 단축

「국가재정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이 2010회계연도 3월말에서 2011회계연도에는 2월말로 단축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원에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내부거래제거, 주석 및 부속명세서 작성 등 통합 작업에 통상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관서는 반드시 2월말까지의 결산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앙관서의 재무결산 작업 수행을 위해서는 세입세출,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등 개별결산이 마감되어야 하는데, 중앙관서 재무결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월초까지는 개별 결산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의 최초 인식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건설되어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회계기준에 의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1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재정상태표에 자산으로 계상되게 되는데, 사회기반시설의 최초 인식 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기타 순자산의증가(적립금및잉여금) 항목으로 반영된다.

③ 자산재평가 최초 시행

국가자산의 신뢰성 있는 가격평가 수행을 위해 2011회계연도에 자산재평가가 최초로 시행된다.

이러한 자산재평가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수행되는데 2009년 1월 1일 이전 취득자

산이 그 대상이다. 이후에는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이 재평가 대상 자산이 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순자산변동표의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재정운영표의 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로 인식한다. 단, 사회기반시설의 장부금액이 최초 재평가로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순자산변동표 자산재평가이익(적립금및잉여금)으로 처리된다.

④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의 감가상각 최초 수행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감가상각(무형자산의 경우 상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감가상각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어 2011회계연도부터 최초로 감가상각이 수행된다.

이 때, 자산재평가된 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액을 자산취득원가로 보아 취득 이후 기간경과를 감안한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그리고 재평가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시점부터 소급하여 감가상각하되, 2011. 1. 1일 이전까지의 감가상각효과는 회계변경누적효과로 순자산변동표의 기초순자산(적립금및잉여금)에 반영한다.

⑤ 연금충당부채의 최초 인식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로서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미래에 추정되는 연금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발생한 금액만큼을 연금충당부채로 재정상태표에 계상한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국가 재정지원이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학연금은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재무제표의 주석과 필수보충정보를 통해 향후 장기재정추계를 공시한다.

이러한 연금충당부채는 국가회계기준에 의해 2년 동안 그 적용이 유예되어 2011회계연도부터 최초로 재정상태표에 계상된다.

연금충당부채 계상 시, 2010년말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충당부채 금액은 회계변경누적효과로 순자산변동표의 기초순자산(적립금및잉여금)에 반영하고, 2011년말 기준으로 산출된 연금충당부채 금액을 2011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계상한다. 그리고 2011년말 기준 연금충당부채 금액과 2010년말 기준 금액의 차이는 연금비용(보험수리적 손익은 순자산변동표, 이외는 재정운영표)으로 반영한다.

⑥ 보험충당부채의 인식

보험충당부채는 국가가 제공하는 보험사업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로서 현재 무역보험기금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등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보험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보험사건으로 인해 지출금액과 지출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추정하여 보험충당부채로 재정상태표에 계상하며 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 및 주석에도 그 내용을 공시한다.

보험충당부채 계상 시, 과거 적용하던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2010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상 기타장기충당부채 금액은 보험충당부채로 계정재분류하고 2011년말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충당부채 금액을 2011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계상한다. 그리고 2011년말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충당부채 금액과 2010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상 금액의 차이와 2011회계연도 중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재정운영표의 보험비용으로 반영된다.

한편,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과 같은 사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기금들은 2010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상 기타장기충당부채로 인식한 사회보험부채를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기타부채)로 계정재분류하고 2011년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역시 동일한 과목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주석에도 그 내용을 공시한다.

⑦ 보증충당부채의 인식

보증충당부채는 국가가 제공하는 신용보증사업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로서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과 같은 사건으로 국가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부담하게 될 금액을 추정하여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하고 재무제표 주석에도 그 내용을 공시한다.

보증충당부채 계상 시, 과거 적용하던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2010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상 금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2011년말 기준으로 산출한 보증충당부채 금액을 2011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계상한다. 그리고 2011년말 기준으로 산출한 보증충당부채 금액과 2010회계연도 재정상태표 상 금액의 차이는 재정운영표의 보증비용으로 반영한다.

〈2011회계연도 재 · 개정된 준칙 · 지침에 따른 회계처리 요약표〉

구 분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사회기반시설	최초인식		기타순자산증가 (적립금및잉여금)
	자산재평가 증감	자산재평가손실 (비배분비용)	자산재평가이익 (적립금및잉여금)
일반유형자산	자산재평가 증감	자산재평가손실 (비배분비용)	자산재평가이익 (순자산조정)
감가상각 (일반 · 기타 특별회계)	재평가되지 않은 일반유형자산 등의 2011년 이전 감가상각 효과		회계변경누적효과* (적립금및잉여금)
연금충당부채	2010년말 기준 산출금액		회계변경누적효과* (적립금및잉여금)
	연금비용 (보험수리적손익)		기타순자산증감 (순자산조정 또는 적립금및잉여금)
	연금비용 (보험수리적손익 이외)	연금비용	
보험 · 보증 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보증회계준칙에 따라 2010년말 보증충당부채를 재산출한 경우 과거 2010년 인식금액과의 차이		회계변경누적효과* (적립금및잉여금)
	보험 · 보증비용	보험 · 보증비용	

* 순자산변동표의 기초순자산에 반영하고 전기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아니함

03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① 내부거래 제거 여부 확인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일정 단축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부거래 제거 여부 확인이다. 2년간의 국회 제출 유예기간 동안 실시한 재무결산 결과, 내부거래 제거 여부 확인이 재무결산 일정이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내부거래란 국가나 중앙관서 통합재무제표 작성 시 상계 제거되어야 하는, 보고실체(국가, 중앙관서) 내부의 회계실체 간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하위의 회계와 기금들 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해야 한다.

내부거래 제거는 기본적으로 전산시스템(dBrain)을 통해 자동으로 수행된다.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거되지 않은 내부거래는 결산담당자가 수동으로 추가 제거할 수 있다.

내부거래 자동제거에 필요한 정보는 거래처, 금액, 계정과목 등이며, 이러한 정보가 적정하다면 결산담당자가 수동제거 해야 하는 내부거래가 적어 재무결산의 일정이 상당부분 단축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기준센터와 함께 내부거래 자동제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1회계연도 중간결산 검토 작업을 통해 내부거래 제거 여부를 확인하였다. 검토 결과 발견된 내부거래 관련 거래처 입력 오류는 해당 중앙관서로 하여금 수정 조치하도록 하였다.

② 계정과목별 명세서 적정성 검토

계정과목별 명세서는 선급금, 건설중인자산, 미지급금, 선수금 등의 계정과목에 대해 거래처 별로 조회할 수 있는 명세서이다. 결산담당자는 계정과목별 명세서를 통해 해당 계정과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선급금과 건설중인자산 명세서를 통해서는 미배부된 취득부대비용과 기성평가를 통해 발생한 금액의 본자산 대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미지급금과 선수금 명세서를 통해서는 자산 구입대금의 지급 여부와 매각 자산의 업무처리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연결산 시에 명세서 검토를 통해 계정과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검토 업무를 연결산 이전에 미리 수행하면 재무결산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중간결산 검토 시 계정과목별 명세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검토 결과 발견된 거래처별 명세서 오류는 해당 중앙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였다.

③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재무결산 시 결산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하는 자산 중 일부는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산으로 미인식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시물품, 도서, 서화, 예술작품 등의 경우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품현재액보고서에서는 보고되고 있지 않지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시물품 등은 일반유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금융리스자산의 경우에도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국가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결산담당자는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시물품과 금융리스자산이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예산결산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우발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재정상태표의 부채로 미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진행중인 소송사건 중 손실가능성이 확실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발손실과 우발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패소가 확정된 손해배상액은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우발손실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나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손해배상액은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므로, 법원에서 계류 중인 손해배상액은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1년 이상 근무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원가,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의 구분에 있어서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가계산준칙」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비용은 프로그램원가로 분류하고,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분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은 비배분비용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 재무결산보고서 간 연관정보 확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무결산보고서는 재무제표인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과 부속서류인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제표와 부속서류에 공시되는 정보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속명세서 중 금융상품명세서의 금액정보는 재정상태표의 장·단기금융상품 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결산담당자는 재무결산 시 결산보고서간의 연관되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가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앙관서 재무결산보고서 간 연관정보의 오류를 발견하여 조치하려 한다면,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 일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시 이점을 유의하여 보고서간 연관정보 확인을 수행하여야 일정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04 맺음말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의 주요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앙관서 재무결산 일정 단축에 대비한 담당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필요하고, 사회기반시설, 자산재평가 등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의 주요 변동사항들을 정확히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내부거래 제거 여부 확인을 통해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시 내부거래제거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계정과목별 명세서 적정성 검토,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간 연관정보 확인 등을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센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운영단뿐만이 아니라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담당자, 사업담당자 등 국가결산과 관련된 모든 인력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02
NASC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유동훈 연구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Tel_02.3149.7556 / e-mail_blacksky21@kicpa.or.kr

01 국가회계·결산담당자 교육 지원(10~11월, 8차~15차)

기획재정부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과 '11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국가회계실무교육 전문교육과정 총 15회차 교육이 지난 12월 2일 모두 마무리 되었다. 8월부터 시작된 전문교육과정은 통합과정(3일)과 업무별 특성화과정(2일)으로 1회차 5일 35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성화 과정은 업무담당자(지출, 수입, 재산관리관)와 결산담당자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통합과정은 434명, 특성화과정은 440명이 이수하였으며 중복인원을 제외한 총 이수인원은 502명이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전문교육과정의 교재작성 및 강의진에 참여하였다.

02 민간기금 재평가 교육(11.3)

국가회계기준센터는 11월 3일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민간기금을 대상으로 자산재평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28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진행된 민간기금의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 적용 공지를 위한 회의의 결과로서 민간기금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 졌다.

이번 교육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등 총 11개의 민간기금의 자산재평가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는데,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의 주요 내용과 민간기금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강의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참고자료로 재평가업무에 필요한 물가배수표 등의 기본 자료와 강의에 사용된 교육 자료도 제공하였다.

03 공공기관 IFRS 결산 관련 워크숍(11.15)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지난 11월 15일 한국전력 KDN회관 양지홀에서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결산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업무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국가회계기준센터, 더존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워크숍은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공기업과 2013년에 도입이 예정된 준정부기관의 결산 유의사항과, 당해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신규 결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업무추진 시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04 2011회계연도 정부결산 국가회계 교육(11.14~23)

기획재정부에서는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일선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1회계연도 정부결산 교육을 시행하였다. 결산 교육은 각 시·도별로 총 12개의 교육장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3,000여명의 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석하여 정부결산 업무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다. 교육내용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첫째 날에는 예산결산과 관련된 수입·지출·채권 업무에 대해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둘째 날에는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재무결산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재무결산 교육은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와 '오류사례 및 처리방법'이란 주제로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연구원들이 강의를 하였다. '예산과목과 재무회계계정과목의 연계' 교육에서는 국가회계 관련법령 등 제도에 관한 설명 및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회계의 기본개념 그리고 예산회계과 재무회계의 연계과정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오류사례 및 처리방법' 교육에서는 그동안 재무결산에서 자주 발생해 오던 오류들을 사례로 정리하여 오류의 발생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05 공공기관 회계결산 자문회의 개최(11.16)

국가회계기준센터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인 공공기관 회계결산 자문위원회 회의가 11월 16일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개정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김경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06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 강의 촬영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실무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것에서 나아가 국가회계 결산담당자 및 일선관서 업무 담당자들의 교육 편의 제공과 국가회계제도의 제·개정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사이버 동영상 강좌를 대폭 교체하기로 계획하고 11월 중 강의촬영을 진행하였다.

기존 사이버 동영상 강좌 대비 국가회계처리지침의 제·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오류사례 및 기금회계처리지침 등의 실무 중심 컨텐츠 과목을 신설하는 등 많은 변화를 꾀한 점이 특징이다.

이 사이버 동영상 강좌들은 2012년 초에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coti.go.kr)에서 수강이 가능하도록 준비 완료할 계획이다.

07 국가회계기준 자문위원회 개최(12.1)

국가회계기준센터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인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위원장 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 경영학과교수)가 12월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 내부통제기준 제정 연구(안), 국가통합재무제표 결산개요 등 2개의 안건을 보고하고 센터 업무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08 「2012 국가회계제도 대변혁」 세미나 공동주최(12.20)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2 국가회계제도 대변혁(부제: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적용에 따른 변화와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가회계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공인회계사 및 회계 관련 학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각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세미나의 각 세션 별 주제로는 세션1 “해외 국가회계제도의 동향 및 전망”, 세션2 “공공부문 회계환경 여건과 미래 전망”, 세션3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에 따른 변화와 발전방향”이었으며, 이에 관한 주제발표 및 각 세션별 토론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배기수 교수(충북대)는 「해외 선진국 정부회계제도 비교 및 분석 연구」 발표를 통해 주요 5개국(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의 국가회계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을 조사·분석하면서, 각국의 회계 및 예산에서의 발생주의 도입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발생주의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허 웅 회계사(안진회계법인)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회계기준 비교 및 분석연구」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을 자세히 비교분석하였다.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차이 중에 유사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공공부문 회계기준에 관한 연구수행에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세션에서 김경호 교수(홍익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경과, 도입현황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정착 및 발전을 위해서는 ①고위정책자들의 관심 및 의사결정에 활용이 필요하며, ②예산과 회계의 연계 강화, ③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 노력에 대한 공감 필요, ④프로그램별 원가정보 및 성과정보의 연계 강화, ⑤정부 내 발생주의 정부회계 전문가 확보 및 육성, ⑥dBrain 시스템의 자동분개 보완 및 재무회계정보와 관리회계 정보 제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각 세션 별 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6명의 정부회계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적용에 따른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각 세션별 토론 참여자>

■ **세션1**
- 사회 : 신종렬(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패널 : 최원목(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이종운(감사교육원 교수), 김지홍(연세대 교수), 이민규(충북대 교수), 최연식(경희대 교수), 권성수(한국회계기준원 조사실장)

■ **세션2**
- 사회 : 손성규(연세대 교수)
- 패널 : 이우종(행정안전부 부이사관), 김찬홍(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장 권(부천시 세무2과장), 박재환(중앙대 교수), 박성환(한밭대 교수), 윤정원(국가회계기준센터 책임연구원)

■ **세션3**
- 사회 : 이장희(충북대 교수)
- 패널 : 신형철(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이경섭(서울시민감사관),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태화(경원대 교수), 전영순(중앙대 교수), 김상노(국가회계기준센터 팀장)

한편 이날 축사에서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세 가지 기대효과로 국가자산·부채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건전성 제고와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관리의 기본적 토대 마련, 국제기준에 부합한 재정통계 산출이 가능함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공직자의 회계·결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재정운영 성과 분석 지표 개발 등 수년에 걸쳐 여러 가지 후속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09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관리자 대상 전문교육」 공동주최(12.22~23)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영종도 골든스카이 리조트에서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관리자 대상 전문교육」을 개최하였다. 그동안 재무결산 교육이 주로 실무자 위주(7급 이하)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이번 재무결산 관리자 전문교육에는 중앙부처 및 일선관서 과장 및 담당 사무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전문교육은 종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외에 국가 통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재무결산 관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필요성"과 "2011회계연도 통합재무제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확인하여 앞으로 국가회계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개최되었다.

10 국가회계기준센터 홍보 책자 발행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신생기관으로서 인지도 상승 및 센터 소개 등을 목적으로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였다. 본 브로슈어는 『공공부문 회계의 Think Tank』 역할을 비전(vision)으로 하는 센터의 포지셔닝을 센터의 CI와 연계하여 화이트앤블루톤으로 이미지화 하여 신뢰성 있는 전문가 집단을 전체 콘셉트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립배경, 비전 및 전략목표, 연혁, 조직 및 주요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브로슈어는 향후 센터가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국내외 행사시 관계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11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 신규 채용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지난 11월 17일 정부회계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 2명을 신규채용 하였다. 이번 신규 채용에는 국내 및 해외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지니고 회계법인 및 관련기관 등에서 수년간 회계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대거 지원하여 정부회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 신규 채용과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에는 특히 관련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정부회계분야에 대한 남다른 도전정신이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채용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편호범 소장, 총괄팀장 등 연구원 21명, 행정인력 2명 등 총 24명의 인력으로 운용된다.

국가회계제도 동향

03 NASC

김세화 연구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Tel_02.3149.7573 / e-mail_sehwakim@kicpa.or.kr

01 국가회계제도심의위 소위원회(11.4,24)

11월 4일, 24일에 개최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17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지침과 국가회계 이슈사항을 논의하였다.

11월 4일에 개최한 첫 번째 소위원회에서는 우체국 예금 및 우체국 보험 및 우체국 보험 적립금 처리반안,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안),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결정을 위한 자문회의 구성방안, 고속국도 및 하천 토지 재무제표 표시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11월 24일에 개최한 두 번째 소위원회에서는 융자회계처리지침 제정(안), 국유재산위탁회계처리지침 제정(안), 현행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을 논의하였다.

02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결정을 위한 자문회의 (11.22)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연금회계준칙 제정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보험수리적 가정을 결정하고, 기금의 충당부채 산출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결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지난 11월 22일 개최하였다.

이는 연금회계준칙 제4조에 재무적 가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난 8월 5일 있었던 연금충당부채 결산담당자 회의 결과 자문회의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한데 따른 것으로 자문회의는 보험·재정·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자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재무적 가정의 기금 간 통일성과 논리적 적합성을 위한 사전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토의 결과는 연금충당부채 산출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03

제17차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개최 (12.13)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부차관)가 12월 13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제정(안), 융자회계처리지침 제정(안) 및 융자회계처리 적용예외 승인의건, 국유재산 위탁회계처리지침 제정(안), 현행 회계처리지침 개정사항(안), 국가회계제도 관련 정책 세미나 개최 계획보고 등 5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04

국가회계검사 기본교육 실시 (10.10~28_총3차)

지난 10월 10일부터 28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과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여의도 소재)에서 국가회계검사 기본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감사원의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 검사업무 수행 시 회계법인을 검사 대행자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사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국가회계 전문성 제고 및 국가재무제표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은 국가회계 관련 규정 및 예산제도의 이해, 국가회계기준 해설, 국가재무제표 검사방향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감사원 소속 공무원 및 디지털예산시스템운영단 등이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공인회계사 65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외국회계제도 동향

04

김효정 연구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국제협력팀
Tel_02.3149.7559 / e-mail_smiley@kicpa.or.kr

01 IPSASB, ED 46호 "권장실무지침, 공공부문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Long-Term Sustainability)에 대한 보고" 발행 (2011년 10월 19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공개초안(ED: Exposure Draft) 46호 권장실무지침(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 "공공부문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Reporting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a Public Sector Entity's Finances)"을 발행했다. 본 ED는 2009년 말 발행된 자문보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다. ED 46호는 공공부문의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효과적인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특히 기관들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제시한 추정을 활용하여 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방식을 택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국가채무위기는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가 세계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세금과 기여금을 인상하거나 부채를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정부가 부채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복지후생제도와 관련된 현재와 미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해 왔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정부와 다른 공공부문이 직면한 주요 위험에 대한 서술식 설명과 함께 보다 장기적인 자원의 유출입에 대한 예측을 제공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이 현재 정책의 지속가능성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재무보고의 핵심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충해준다. "세계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변동성은 재무제표만으로는 국민, 투자자, 다른 이용자들이 정부와 공공부문의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IPSASB의 확신을 굳건히 해주었다."고 안드레아 버그먼(Andreas Bergmann) IPSASB 위원장이 설명했다. "ED 46호는 실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고 목적 적합하며 이해 가능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모든 정부나 관련기관들이 ED를 철저히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의 보고가 필요한지에 대해 평가하기를 권고한다."

본 IPSASB의 프로젝트는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 경험이 있는 기준제정기구, 다년간의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 경험이 있는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유럽연합의 통계국인 Eurostat와 같은 초국가적인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된 특별임무위원회의 감독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ED 46호는 IFAC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IPSASB는 IFAC 회원, 준회원, 지역회계사조직이 회원들과 직원들이 본 ED를 활발히 이용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02 IPSASB, 자문보고서 "서비스성과정보의 보고"를 발행하다. (2011년 10월 21일)

IPSASB는 자문보고서 "서비스성과정보의 보고(Reporting Service Performance Information)"를 승인했다. IPSASB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GPF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s)의 이용자들의 회계책임과 의사결정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무보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성과정보의 보고를 검토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을 위한 일관된 체계개발을 위해 원칙에 기반한 방법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안드레아 버그먼(Andreas Bergmann) IPSASB 위원장은 "서비스성과정보는 자원의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사용, 서비스제공, 공공부문의 목표달성책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성과보고는 미래의 서비스제공활동과 자원수요에 대한 예측과 함께 현 보고기간의 서비스제공목표달성에 대한 양적, 질적 정보뿐만 아니라 재무정보와 비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현재 서비스성과정보를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의 실무는 다양하다. IPSASB의 서비스성과정보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관 간의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자문보고서는 서비스성과정보를 보고하는 체계를 제안한다. 이러한 체계는 보고되는 서비스성과정보의 범위, 공공부문의 목표, 그러한 목표의 달성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서술적 논의를 포함한다. 자문보고서는 또한 표준화된 서비스성과정보관련 용어와 실무적 정의를 제시하여 제안된 체계로 요약된 서비스성과정보보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자문보고서는 IPSASB 웹사이트(www.ibsasb.org)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IPSASB는 IFAC 회원, 준회원, 지역회계사조직들이 회원과 직원들이 본 자문보고서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03 IPSASB, IPSAS 32 "서비스양허계약: 양허권자"와 연간개선기준 승인하다. (2011년 10월 31일)

국제공공부문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32 "서비스양허계약: 양허권자(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Grantor)"(IPSAS 32)라는 획기적인 새 기준을 승인했다.
서비스양허계약은 정부와 다른 공공부문이 핵심공공서비스를 유지,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양허계약 체결은 계속되는 세계금융경제위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거래의 보고방법에 대한 국제적 지침은 존재하지 않았다.

안드레아 버그먼(Andreas Bergmann) IPSASB 위원장은 "IPSAS 32는 서비스양허계약의 자산과 그와 관련된 계정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회계책임을 향상하겠다는 IPSASB의 목표를 보다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는 또한 공공부문에서 유의적이고 종종 복잡한 거래인 서비스양허계약을 회계처리하고 보고하는 방식의 일관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IPSAS 32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국제재무보고기준해석위원회(IFRIC: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에서 발행한 해석(IFRIC) 12호 "서비스양허계약"에서 운영자의 회계에 사용된 방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양허계약의 양허권자 회계를 처리한다. IFRIC 12는 양허권자가 아닌 운영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IPSAS 32는 정합성프로젝트는 아니다. 그러나 IPSAS 32는 양허권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서비스양허자산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양허계약상 양허권자나 운영자 중 어떤 실체가 자산을 인식해야하는지를 결정하는 IFRIC 12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IPSASB는 또한 "2011년 IPSAS 개선사항"을 발간했다. IPSASB의 개선프로젝트는 IASB의 연간개정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IPSAS에 대한 일반적인 개정뿐만 아니라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과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1년 개정안은 주로 두 기준간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존 IPSAS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IPSAS 32와 "2011년 IPSAS 개선사항"은 IPSASB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IPSASB는 IFAC 회원, 준회원, 지역회계사조직과 기업들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고 회원과 직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04 ISAB, IFAC 공공·민간부문 회계기준개발 협력 강화하기로(2011년 11월 22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와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은 2011년 11월 22일 민간 및 공공부문 회계기준 개발 협력 강화 협약을 발표했다.

IASB는 100 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채택을 요구, 승인하고 있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개발, 공표하는 기관이다. IFAC는 독립적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s) 제정기구인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업무를 지원한다. IPSAS는 전 세계 지방정부, 기관, 규제기관을 포함한 공공당국에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IASB와 IPSASB는 과거에도 협력해왔다. IPSAS의 많은 부분은 IFRS에 기반하고 있으며, 양해각서의 형태로 체결된 협약은 높은 품질의 재무보고기준이 효과적인 자본시장과 견실한 경제성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IASB와 IFAC, 공동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본 협약은 두 기관의 기준제정활동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양해각서는 또한 IFAC가 지원하는 국제감사인증위원회(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와 IASB 간의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한 측면으로 IAASB는 제안된 회계기준의 검증가능성 및 감사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IASB에 자문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협약은 IASB와 다른 회계기준제정기관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IFRS 재단 이사회"의 전략에 대한 검토결과와 일치한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한스 후거보스트(Hans Hoogervorst) IASB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기가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의 재무보고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번 협약은 IASB와 IFAC 간의 이미 공고한 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이라고 평했다.

이언 볼(Ian Ball) IFAC CEO는 "국가채무의 위기는 정부의 부실한 재무보고가 재정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을 드러내 보였고 투명성이 신뢰의 필수조건임을 보여주었다. IPSAS는 공공부문 재무보고기준으로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된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간의 기존 협력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의 기준을 개발하는 IPSASB의 능력을 제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 MoU는 http://go.ifrs.org/IFACMoU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05 IFAC 독일 베를린 회의에서 위원회 세미나의 주요내용을 발표(2011년 11월 22일)

127개국에 회원과 준회원을 두고 있는 국제회계사조직인 국제회계사연맹(IFA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은 지난주 독일 베를린에서 제34차 일반위원회의(Ordinary Council Meeting)를 개최했다. 본 회의의 일부로 IFAC은 연례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올해의 세미나 주제는 "위기에 대응하는 회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관점"이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은행, EUROSTAT, 유럽감사원, 뉴질랜드재무부, 공공재무부문칙허회계사협회(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가채무의 위기가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정관리, 공공부문 회계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투명성과 회계책임은 아랍의 봄을 이끈 시위대뿐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라고 안드레아 버그먼(Andreas Bergmann) IPSASB 위원장이 세미나에서 말했다.

이언 볼(Ian Ball) IFAC CEO는 이미 2007년부터 IFAC이 "국가부채발행기관을 통제하는 기준과 규제가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할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우려"하는 주장을 해왔음을 청중들에게 상기시켰다.

발표자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를 공정하게 설명, 평가하기 위한 공동의 표현방식의 필요성, 국가발행 증권이 내부자거래나 시장조작과 같은 악용의 대상이 될 가능성,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IFAC는 "국가부채위기, 긴급한 문제-교훈에서 개혁까지"를 주제로 한 후속세미나를 2012년 3월 19일에서 20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세계은행그룹의 빈센조 라비아(Vincenzo LaVia), 고란 퍼슨(Göran Persson) 전 스웨덴 총리,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의 제임스 털리(James Turley),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니콜라 베론(Nicolas Véron), 미국재도약계획(Comeback America Initiative) 소속이면서 전 미감사원장인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 등 14명의 연사가 확정되었다.

"IFAC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세계 전역에 걸쳐있는 167개 회원기관의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고란 티드스트롬(Göran Tidström) IFAC 의장이 말했다. "현재의 핵심적인 문제 - 국가부채의 위기와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회계의 필요성-에 관한 이러한 발표와 논의는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세계의 재무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이 된다."

위원회 회의의 핵심내용은 앞으로 몇 주 동안 IFAC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다.

05
NASC

공지사항

김상노 팀장 _ 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
Tel_02.3149.7551 / e-mail_ alcaz@kicpa.or.kr

재무결산 지원 콜센터 운영

국가회계기준센터는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일선관서의 질의 시 담당 연구원과 연결하고 있으니, 결산업무 중 궁금하신 점은 02-3149-7561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질의접수도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구독 신청 안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 회원가입 또는 ②02-3149-7560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www.nasc.or.kr)에는 국가회계관련 뉴스, 발간자료, 기준 및 법령, 세미나 및 교육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소 국가회계에 관하여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코너와 FAQ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정부회계저널, 알기쉬운 국가회계기준 등의 발행물과 세미나자료, 연구보고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가회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 제안

국가회계제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의 [의견제안] 메뉴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NASC

VISION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

전략 목표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영국,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기획재정부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 위탁운영기관 | KICPA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한국공인회계사회

(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3층 **Tel**_ 02.3149.7560 **Fax**_ 02.3149.7570 **Homepage**_www.nasc.or.kr

2012년 1월 2일 발행